

II. 알기 쉬운 심판절차

6. 심결(결정)에 대한 불복

▶ 특허심판원의 심결(결정)에 대한 불복은?

- 특허심판원의 심결(결정)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결문(결정문)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결(결정)이 확정됩니다.

📖 특허법원에 소장제출시 유의할 사항

- 소제기 기간의 준수(우편접수시 소인일자 불인정)
- 증거서류 : 심결등본(사본), 등록원부(등록된 경우)
- 첨부서류 : 소장부분(특허실용신안 4부, 상표디자인 3부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, 위임장(대리인이 있는 경우), 심결(결정)문등본 송달증명원
- 기 타 : 인지대, 송달료 예납 등
- 제출처 : 우)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(둔산동)
(특허법원 9층 특허과) 042) 480-1463
-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: <http://ecfs.scourt.go.kr/ecf/index.jsp>

📖 공익변리사의 심판·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원

-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산업재산권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익변리사가 직접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를 지원
- 지원분야
 - 지원대상자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, 무효심판, 정정심판 및 상표 등록의 취소심판
 - 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
- 지원절차 :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신청서 제출 → 담당 공익변리사 지정 → 지원여부 심사·결정 → 심판·소송 수행
- ※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:
TEL) 02-6006-4300, FAX) 02-553-5865, 홈페이지) <https://www.pcc.or.kr/>

7. 자주 범하는 실수 및 기타 안내

▶ 1. 심판청구서 제출 시

- (상표 공통) 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‘서비스표’, ‘상표서비스표’가 아닌 ‘상표’로 기재(구법에서는 서비스표, 상표서비스표로 기재 필요)
- (상표 권리범위 확인심판) 청구의 이유에는 일부 지정상품별로 청구하나, 청구의 취지에는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(2016.9.1. 이후 청구부터 지정상품별 청구제도 신설)
- (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)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제출 시 특허발명과 구체적 대비표를 누락, 확인대상발명의 실시(예정)여부 기재 누락
- (무효심판·권리범위 확인심판 공통) 공동권리자 중 일부 누락
- (거절결정 불복심판) 공동출원인 중 일부 누락
- (정정심판) 질권자·실시권자 동의서 미첨부, 정정 전과 정정 후에 대한 특허발명과 구체적 대비표 누락

▶ 2. 중간서류 제출 시

- (대리인 선임신고) 특허법인인 경우 지정변리사를 미기재
- (지정기간연장) 불가피한 연장사유에 대한 소명서 미첨부(단, 최초 답변서 제출기간 연장시는 제외)
- (정정청구) 질권자·실시권자 동의서 미첨부, 정정 전과 정정 후에 대한 특허발명과 구체적 대비표 누락,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정정청구서 제출(반려 대상)
- (심판비용액 결정청구) 심결확정 이전에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제출(반려 대상),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할 보수에 소요금액 전액을 기재(심판청구료 범위 이내만 가능)

▶ 3. 취하서 제출 시

- 피청구인 동의서 미첨부(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이후 반드시 첨부)
- 특허청에 등록(특허고객번호 부여)한 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 시 인감증명서 미첨부
- 청구인측 대리인에게 심판청구 취하에 대한 권한(특별수권 필요)이 없음

특허심판에 대한 문의 및 서류 제출처

II. 알기 쉬운 심판절차

4. 증거물건

- (증거물건 제출) 증거물건만 제출(증거물건과 「전자문서 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」를 함께 서면(우편)으로 제출 필요)
- (증거물건 반환) 심결확정 이전에 증거물건 반환신청서 제출(반려 대상, 심결취소소송이 있는 경우 특허법원의 문서송부촉탁 요청 시 필요하기 때문)

5. 기타 안내

- (권리자 사망) 심판절차는 중단되며, 특허법 제21조에 규정된 자가 특허심판원에 수계신청 후 심판장의 수계결정이 이뤄지면 심판절차가 진행, 수계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장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며,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절차를 진행
- (권리 양도) 심판절차 진행 중 권리이전이 있는 경우 심판장 직권으로 심판절차속행통지가 이뤄지며 이후 양수인이 심판절차를 진행
- (권리자 주소·명칭 변경) 심판절차 진행 중 권리자의 주소, 성명(법인의 명칭)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, 권리자는 ‘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(경정), 정정신고서’ 또는 ‘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신청서’(2007년 이전에 설정등록된 권리에 한함)를 제출
- (서류 반송)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 후 재발송하며, 2~3회 이상 지속적으로 반송 시 인터넷 공시 송달,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주소보정을 요구하며, 법인이 파산상태로서 청산종결등기 이전일 때는 파산관재인에게 서류를 재발송

특허심판 안내

특허심판원 홈페이지 : <http://www.kipo.go.kr/ipt/>

특허고객상담센터 : ☎ 1544-8080

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: ☎ 02-6006-4300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pcc.or.kr/>

특허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kipo.go.kr/>

특허로(전자출원 및 온라인 심판청구) 홈페이지 : <http://www.patent.go.kr/>

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: <http://www.kpaa.or.kr/>

심판서류 제출처

① 특허심판원 :

우)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7층 심판정책과

② 특허청 서울사무소 :

우)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5층